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. 1. 20 선고 2014가단53054 판결 [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등
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

피고1. 주식회사 A

2. B

3. C

변론 종결2014. 12. 23.

판결 선고2015. 1. 20.

주 문

1. 피고 주식회사 A,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,524,951원 및 이 중 86,343,000원에 대하여
2014. 6. 2.부터 2014. 11. 18.까지는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
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
가.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3. 12. 4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 C는 피고 B에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3. 12. 6. 접수 제61464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주식회사 A, B :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나. 피고 C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 (자백간주 판결)

판사안석

별지